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6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서천호·우재준·이만희

서명옥 · 김선교 · 김예지

조경태 · 최보윤 · 박덕흠

조정훈 • 김용태 • 김장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·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.9명(2019~2023.6월 기준)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·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.5명, 소방청 4명, 경찰청 3.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 릭 및 시설·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 조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·장비의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
제55조(산림항공기 운용) ① (생	제55조(산림항공기 운용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
	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
	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・장비
	의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
	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
	ㆍ시행하고, 이를 매년 전년도
	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
	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